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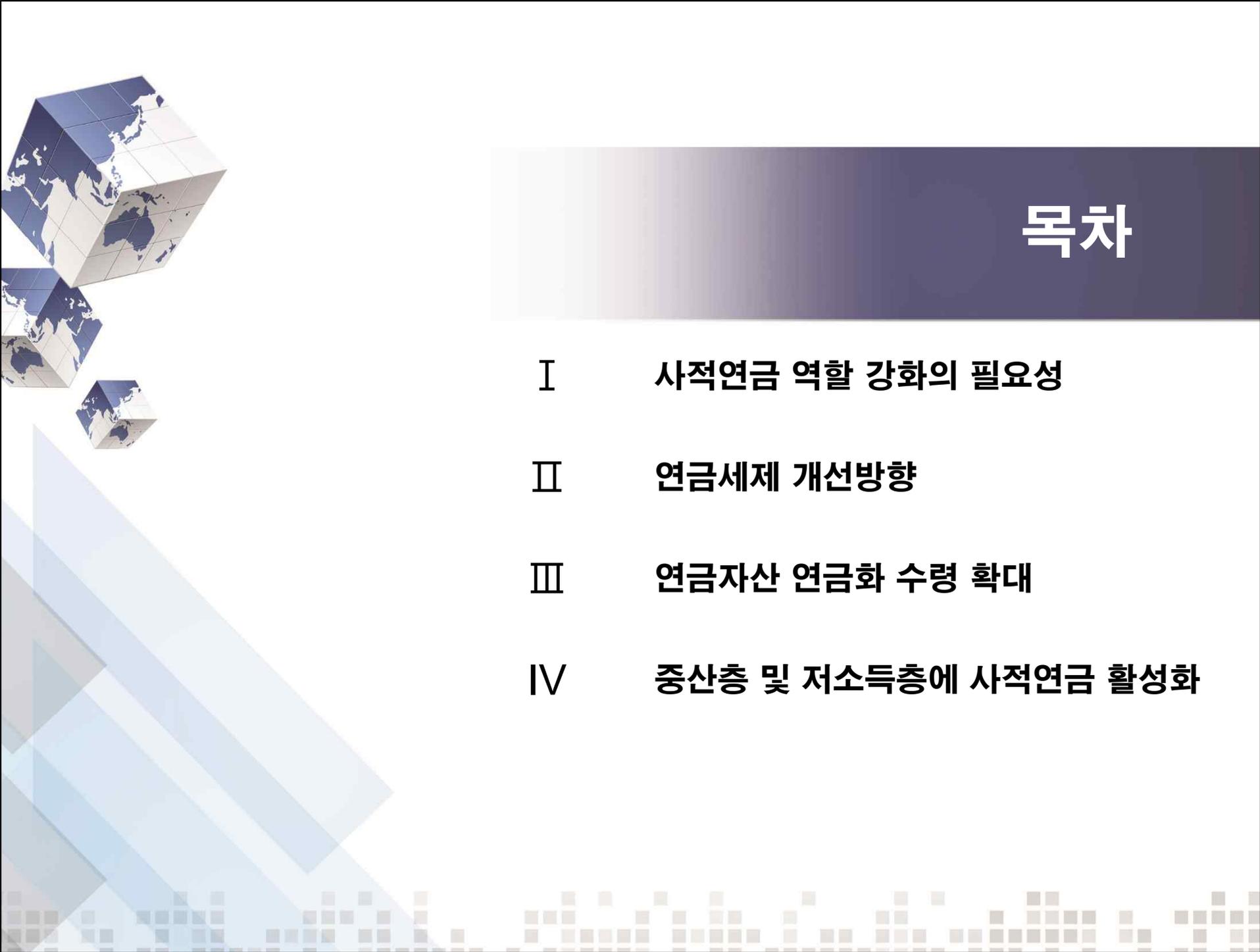
# 연금세제 개선방안

2015. 8. 21

금융개혁자문단 세제분과

발표자 : 정원석(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 목차

- I      **사적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
- II     **연금세제 개선방향**
- III    **연금자산 연금화 수령 확대**
- IV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사적연금 활성화**



# I 사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



# I. 연구배경 및 논의 방향

- ❖ [연구배경]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빈곤 등 고령사회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부문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 따라서, 사적부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논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적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적연금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I.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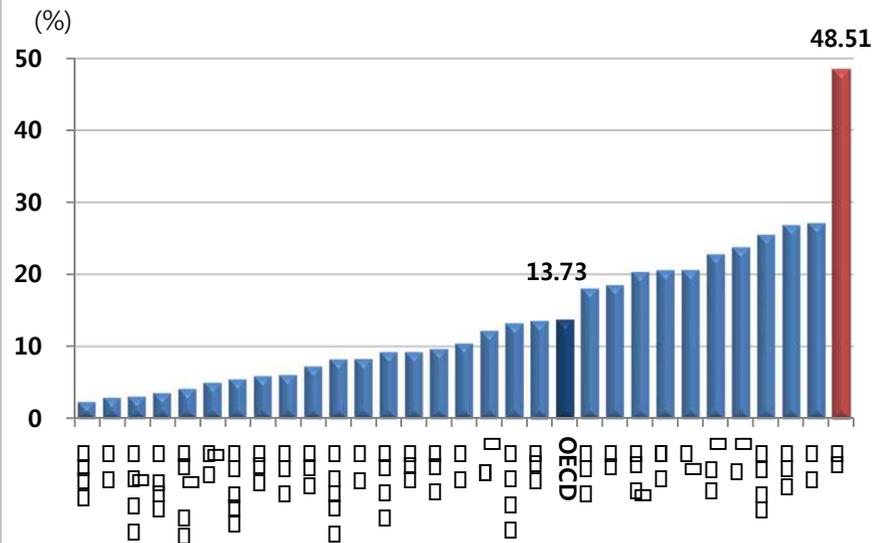
## ❖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48.5%수준

-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 제도 등 다양 (공적연금, 건강보험은 예산의 55.5%)

## ❖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 사회적 문제(노인 빈곤 등)가 심화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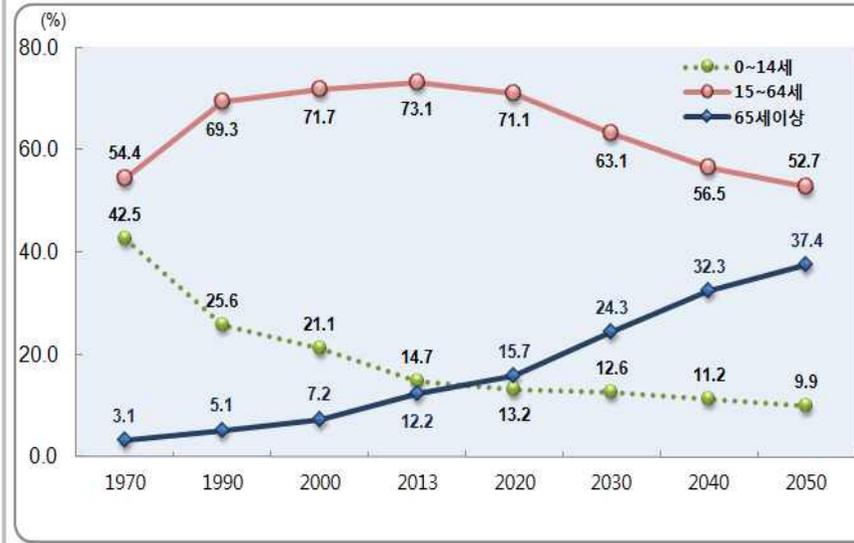
- 노인인구 비중 : 약 12.2% (2013년) → 24.3% (2030년) → 37.4% (2050년)
-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 (20%)로 도달기간: 8년 (일본 12년, 독일 40년, 영국 45년)

### 노인 빈곤율



자료: OECD. "Growing Unequal?", 2011

### 고령층 중심의 인구구조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13)

# I. 고령화로 인한 문제

## ❖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장기적 잠재성장률은 1~2%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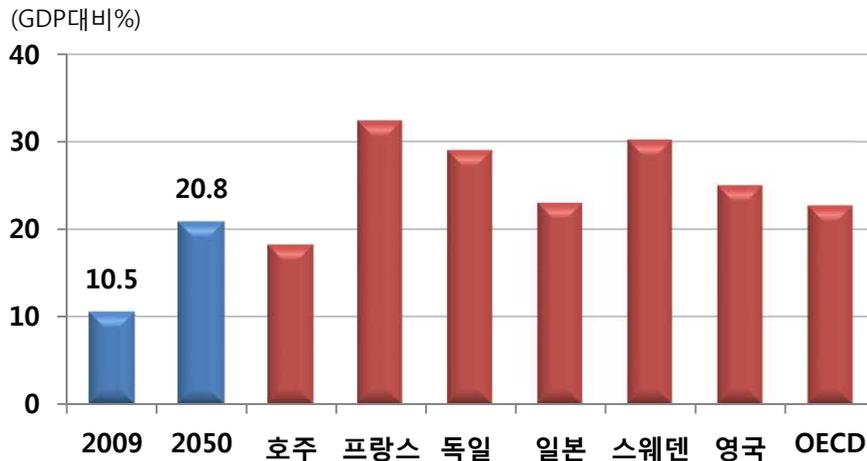
## ❖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악화

- 사회복지지출 : 현 제도 유지시 장기적으로 GDP 대비 20% 상회 (주요 선진국의 현재 수준)

## ❖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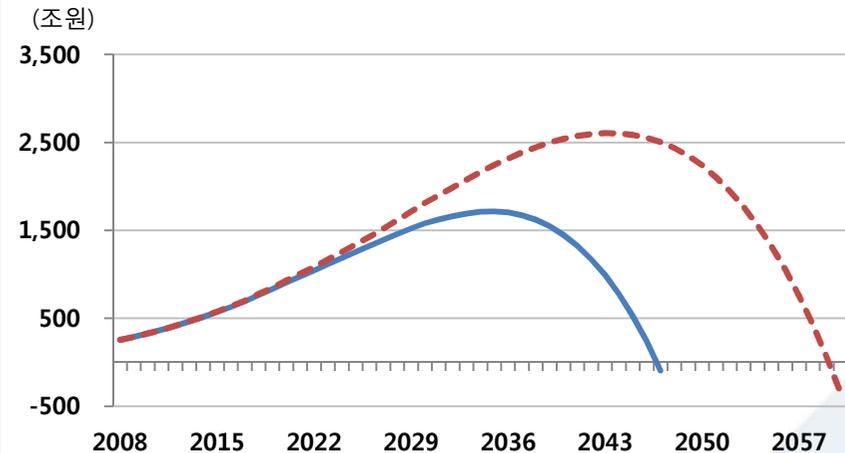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 40%, 기금고갈 시점 연기(2047→2060년)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주: OECD 국가 2009년 기준.  
 자료: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13),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2007년 개혁 전후 기금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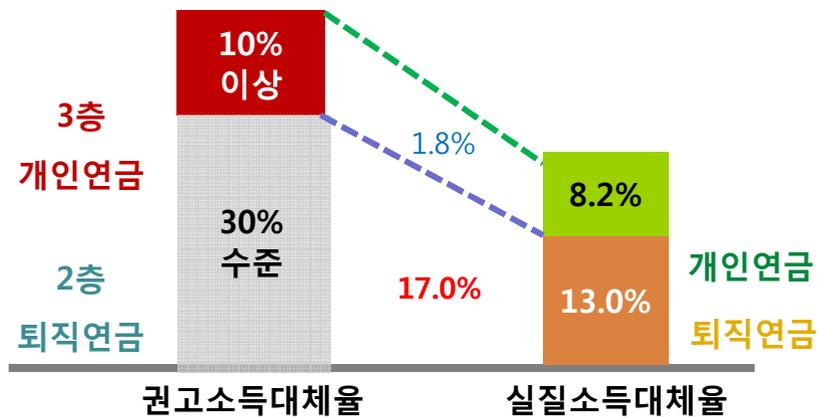


— 개혁 전    - - - 개혁 후  
 자료: 국민연금 내부자료

# I. 중위층 노인의 빈곤위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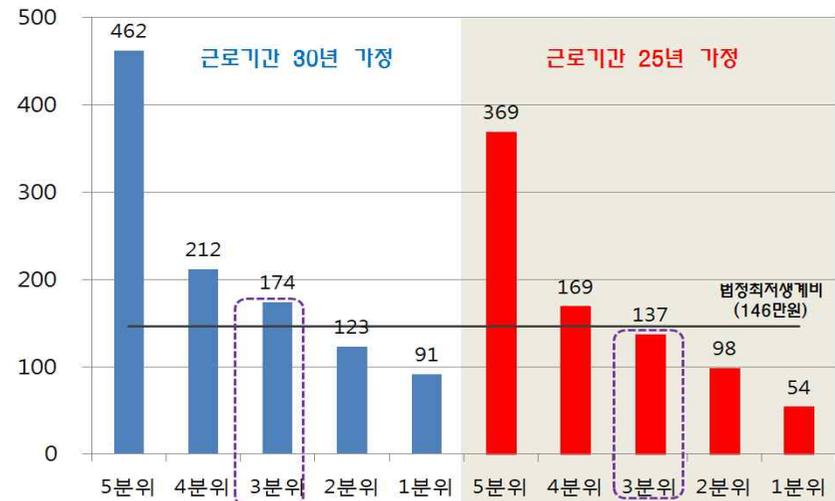
- ❖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
  - 일반적으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은 70%수준으로 추정되나, (OECD)
  - 국민연금으로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으로 15~20%를 총당할 것으로 추정
- ❖ 이로 인해 **중위소득 이하 노령층이 노후빈곤 위험에 처할 우려 존재**
  - 소득계층별로 공사 연금 및 자산 축적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경우를 가정 (30년 근로)
  - 법원기준 최저생계비 : 1, 2분위 미달 (25년 근로시 3분위도 미달)

##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주 : 1) 사적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시나리오 2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 (2013)

##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추정



주: 총소득=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순자산액  
 자료: 이태열 외 (2014),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I. 공사적 부분의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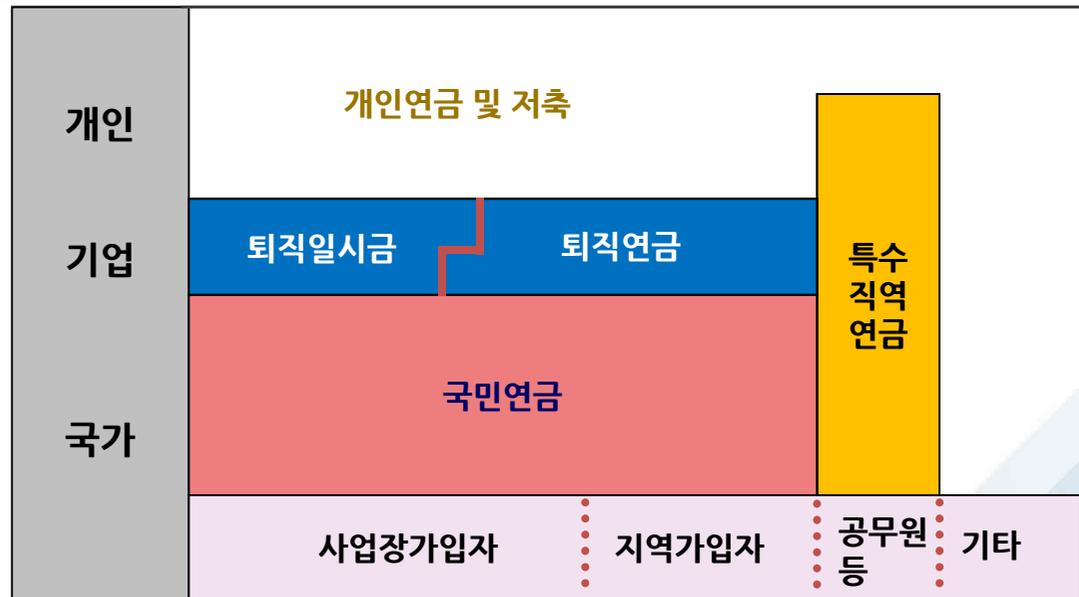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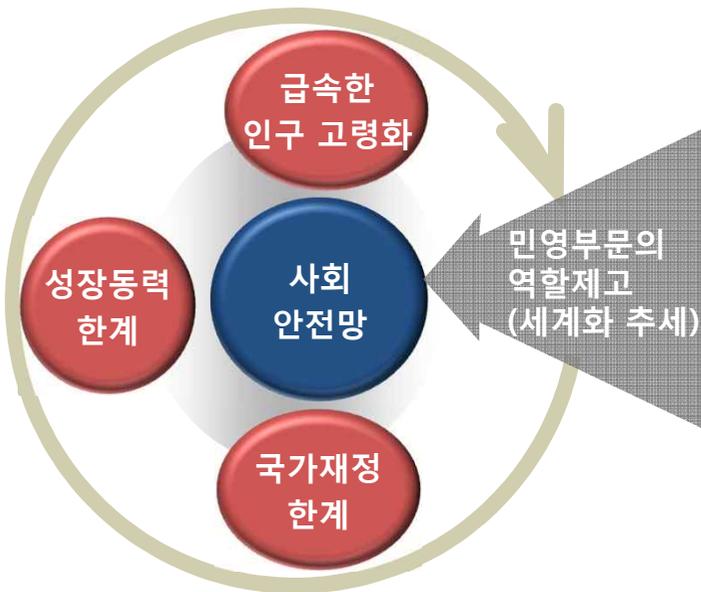
## ❖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정을 참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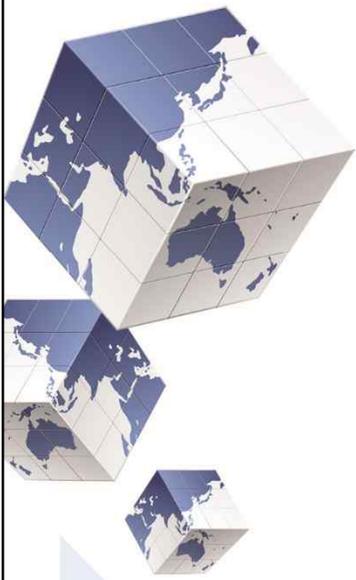
-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사적연금의 강화 (리스터연금 도입 등)

## ❖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방향

- [공적연금]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및 기본적 보장 강화 => 재정문제로 현 상태 유지도 의문
- [사적연금] 사적연금 가입 의무의 실효성 제고 =>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기본안 제시  
 세제개편(보조금 포함)을 통한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 적극적 대응

\* 세제혜택 추가 시 개인연금에 대한 추가가입 의향은 22.1% [세제혜택에 의존]





## Ⅱ 연금세제 개선방향



## II. 연금세제 개요 및 문제점

- ❖ 세제는 자원배분 결정의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나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전문가조차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함.
- ❖ 연금세제를 단순화하여 국민의 사적연금 접근성을 높이고 사적연금 가입률 및 소득대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연금세제

구분		납입 시	수령 시	기타
공적 연금	고용주 기여분	비과세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선택가능)	
	본인 기여분	소득공제		
사적 연금	퇴직 연금	고용주 기여분	연금: 퇴직소득세 일시: 퇴직소득세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본인 임의 기여분 (DC, IRP)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연금저축포함)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 기타소득세
	개인 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연금: 연금소득세 일시: 기타소득세

## II. 연금세제 현황 및 복잡성

- ❖ 사적연금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세제혜택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포함)을 합쳐 400만원, 그리고 퇴직연금(IRP포함) 추가 300만원 임.
- ❖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과세,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운용수익은 과세.
  -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음.
- ❖ 연간연금수령한도는  $[(\text{평가금액}) / (11 - \text{연금수령 연차})] * 120\%$  수식으로 정함.

### 납입 및 수령시 세제혜택과 과세 [예]

2011년		2012년		2013년		연금 수령시 비공제 입증여부			
400만원 납입		500만원 납입		400만원 납입		입증시 과세대상		미입증시 과세대상	
공제	비공제	공제	비공제	공제	비공제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400만원	0	400만원	100만원	0	400만원	8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100만원

## II. 사적연금세제 설계상의 특징

- ❖ 퇴직연금과 IRP는 근퇴법에,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입방법과 적립금원천에 따라 납입 및 수령시 세제가 달라짐.
- ❖ 적립 IRP와 연금저축은 근거법 만 다를 뿐 가입방법, 적립금원천, 적용세제 등이 대부분 동일함.

### 우리나라의 주요 연금세제

구분	근거법	가입방법	적립금원천	납입세제	수령세제	
					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근퇴법	의무가입	고용주	비과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 IRP	근퇴법	의무가입	고용주	비과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적립 IRP	근퇴법	임의가입	가입자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저축	소득세법	임의가입	가입자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 II. 연금세제 개선방안(1)

- ❖ 임의저축 성격이 강한 적립IRP와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 적립IRP와 연금저축간의 적립금 상호 이전 및 가입기간 인정.
  - 단, 퇴직 IRP는 인출조건 강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
- ❖ 세제 단순화를 위해, 같은 계좌 안에서 적립금 원천에 따라 다른 세제를 적용 받는 퇴직연금(DC) 및 퇴직 IRP계좌에는 추가적립금 납입을 제한하고, 본인 추가적립금은 적립 IRP로 일원화.
- ❖ 또한, 현행 1,800만원인 사적연금 납입액 한도는 세제혜택 한도와 동일한 700만원으로 하되,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금을 연금화 수령시 연금소득세 비과세.

## II. 연금세제 개선방안(2)

- ❖ 연금수령 인정 조건을 기간 및 평균 수령금액 기준으로 단순화.
- ❖ 장기적으로는 공사적 연금의 가입형태와 적립금 원천에 따라 수령시 단순화된 과세체계 도입.
  - 의무가입 성격이 강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류과세하고, 임의가입 성격이 강한 적립IRP와 연금저축은 현행방식 유지

### 공사적연금 과세방식 제안

연금		가입방법	적립금원천	수령시 과세방식	비고
공적, 준공적 연금	공적연금	의무가입	가입자/고용주	연금소득세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세로 분류과세
	퇴직연금, 퇴직IRP	의무가입	고용주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적립 IRP	임의가입	가입자	연금소득세	일정 한도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저축	임의가입	가입자	연금소득세	



## Ⅲ 연금자산의 연금화 수령 확대



### Ⅲ. 퇴직연금 수령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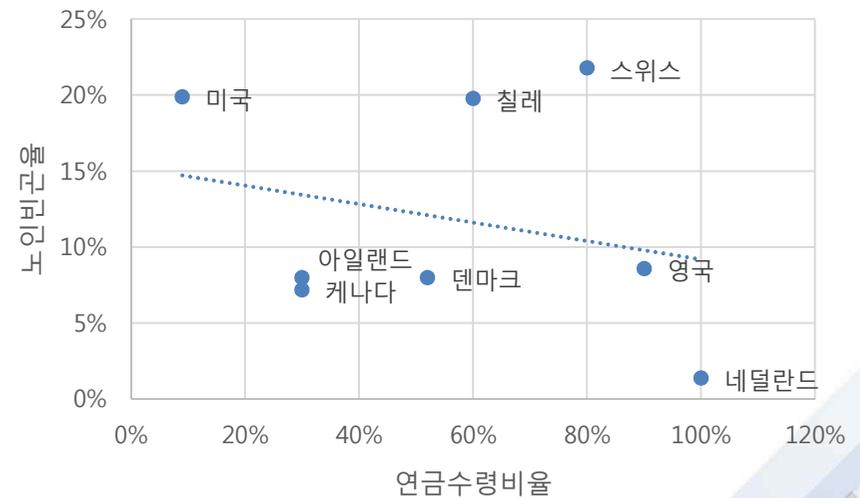
- ❖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율은 3.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
  - 희망 수령형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일시금 51.2%, 연금 47.9%로 조사됨.
- ❖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령형태

구분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수급자 기준	금액 기준	수급자 기준	금액 기준
14.06	97.1%	99.2%	2.9%	0.8%
14.09	95.9%	98.9%	4.1%	1.1%
14.12	95.2%	98.5%	4.8%	1.5%
15.03	96.9%	99.1%	3.1%	0.9%

자료: 금감원, 퇴직연금 영업보고

#### 퇴직연금 수령형태와 노인빈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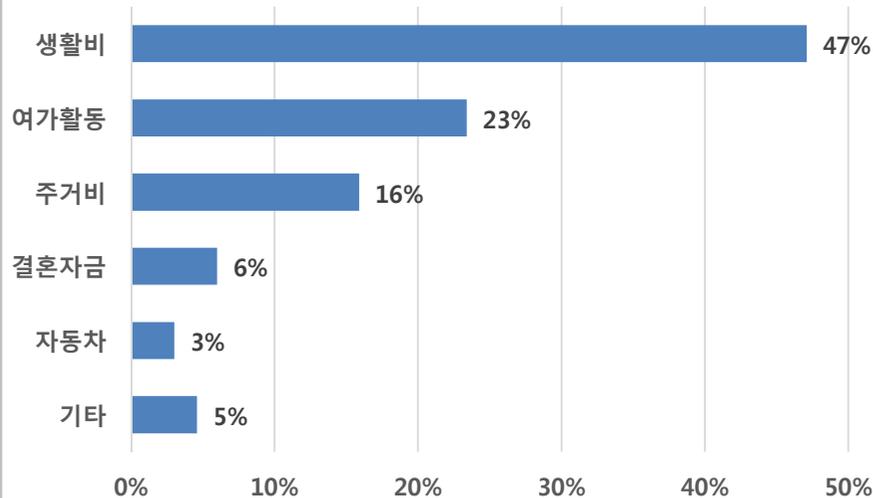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류건식, 김동겸(2015)

### Ⅲ. 연금자산 연금화 수령 확대(1)

- ❖ 퇴직연금이 연금수령에 충분한 적립금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을 조건을 강화하고 중도인출 시 적용세율 인상.
- ❖ 일시금 선택 유인 축소를 위해 실효퇴직소득세 인상 및 연금화 유인 강화.
  - 퇴직소득공제 조정 등을 통해 실효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비율은 상향조정.

중도인출금 사용처



자료: 고용노동부(2014.7.17), 보도자료.

퇴직급여 수령 형태별 인당 적립금

구분	일시금	연금(추정)
2013.12	1,456만원	17,132만원
2014. 3	1,822만원	19,529만원
2014. 6	1,650만원	16,601만원
2014. 9	1,563만원	16,528만원
2014.12	1,456만원	17,132만원
2015. 3	1,985만원	23,658만원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영업실적 각 분기별 자료 재구성

### Ⅲ. 연금자산 연금화 수령 확대(2)

- ❖ 영국에서 시행했던 연금수령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립액의 25%까지 저율 과세, 25%이상에 대해서는 고율 과세
- ❖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종합과세 시 공적연금 및 여타의 소득과 합산 되어 6.6%~41.8% 세율 적용.
  - 금융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한도 2,000만원.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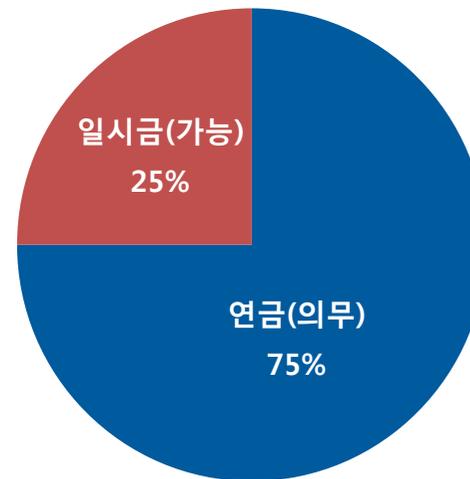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

구분	과세대상	세율
분리과세	연금소득액	3%~5%
종합과세	모든 소득합산	6.6%~41.8%

<소득원천별 종합과세 적용 기준>

사적연금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1,2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영국의 연금수령 의무화



### Ⅲ. 연금자산 연금화 수령 확대(요약)

- ❖ 퇴직연금 중도인출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도인출시 적용세율 인상하여 은퇴시 충분한 은퇴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 연금수령 연령 이후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실효퇴직세율을 인상시키고, 연금화 수령시 감면비율을 인상하여 연금수령유인을 확대.
- ❖ 영국에서 시행했던 연금수령의무제도(Drawdown) 도입 검토.
  - 노인 빈곤률 및 연금 수령비율을 고려 할 때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적용기준 2,000만원 으로 인상.



# IV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사적연금가입활성화



## IV. 중고령자를 위한 Catch up Con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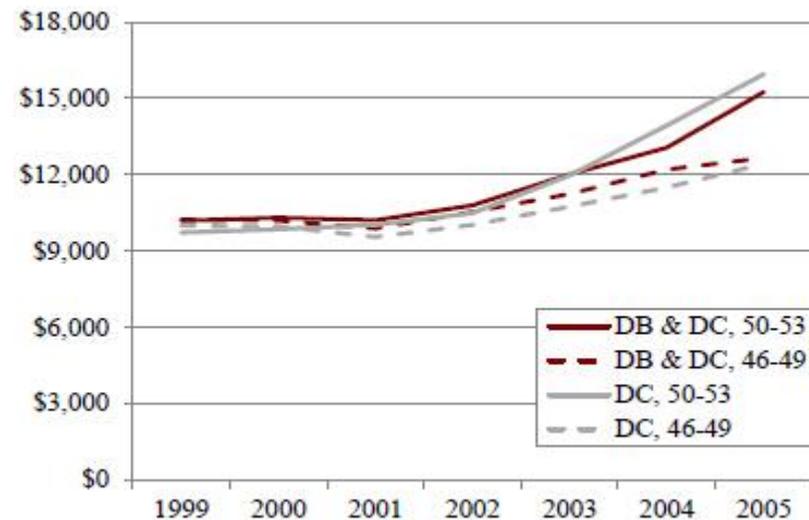
- ❖ 우리나라 40대 이상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 약 300만원 가입률 약30%.
- ❖ 미국에서 중고령자의 노후자금 마련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Catch up Contribution 제도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과세이연 한도 \$18,000에 50세 이상자 에게는 한도를 \$6,000 상향.

### 과세이연 한도 상향에 따른 연령별 반응

구분	2010 (300만원)		2011 (400만원)	
	가입률	납입액	가입률	납입액
30미만	13.7%	162만원	14.0%	186만원
30대	20.3%	209만원	21.9%	228만원
40대	25.6%	244만원	29.4%	280만원
50대	21.1%	258만원	25.1%	295만원

자료: 국세통계 연보 각 연도, 남성 근로자 기준.

### 미국 Catch up plan 도입 후 납입액 변화



자료: Rutledge et al (2014)

## IV.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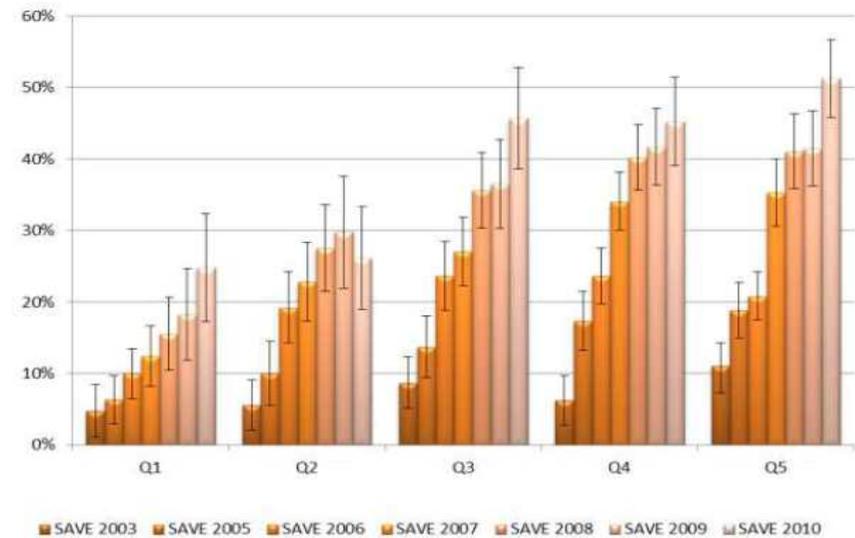
- ❖ 세제혜택으로는 48%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자 에게는 사적연금 납입 동기를 부여 할 수 없음.
  -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시 보조금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 ❖ 독일의 경우 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저소득층 사적연금가입률 25%로 상승.

### 리스터연금 (4인가족)

연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	전체보험료
5,000	308	370	60	738
15,000	308	370	60	738
25,000	308	370	322	1,000
40,000	308	370	922	1,600
50,000	308	370	1,322	2,000
75,000	308	370	1,422	2,100
100,000	308	370	1,422	2,100

자료: Min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류건식 이상우(2011) 재인용

###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소득수준별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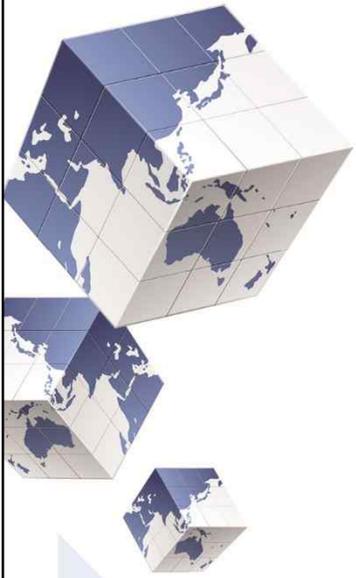
자료: Axel H. Börsch-Supan, Michela Coppola, Anette Reil-Held (2012)

## IV.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확대(요약)

- ❖ 은퇴가 임박한 중산층이 충분한 노후 연금자금을 축적 할 수 있도록, 미국의 Catch up plan 을 참고 한 연령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 세제혜택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시 보조금 지급을 고려 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 하였음.

## IV. 결론 및 요약

- ❖ 사적연금 세제를 쉽게 이해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를 단순화 해야 함.
  - 납입단계의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원으로 일원화 하고, 수령단계의 세제 역시 연금소득세로 단순화.
- ❖ 축적된 연금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연금적립과 수령시 세제 개선이 필요함.
  - 은퇴시 충분한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중도인출조건을 강화하고,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인상 및 연금수령에 대한 혜택강화 필요.
- ❖ 노후준비가 절실한 중고령층을 위한 연령에 따른 추가납입제도 도입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제도 도입을 고려 할 수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